■ (해양경찰청) 범죄수사규칙 [별지 제182호서식]

소 속 관 서

제 0000-000000 호 0000.00.00.

수 신 :

제 목 : 응급조치 보고

행위자	성 명	
	주민등록번호	
	직 업	
	주 소	
	피해자와의 관계	
죄 명		
행위사실요지		
피 해 자		
신 고 자		

위 사람에 대한 스토킹행위에 관하여 신고를 받고 즉시 현장에 임하여 다음과 같은 응급조치를 취하였음을 보고합니다.

□ 스토킹행위의 제지

□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서면경고

□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

□ 피해자등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

• 사법경찰관에게 아래의 긴급응급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
-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
-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에 대한 「전기통신기본법」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

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아래의 잠정조치 청구 또는 신청을 요청할 수 있음
-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
-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,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
-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, 가족에 대한 「전기통신기본법」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
- 「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('24.1.12.~)
-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

□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 등 인도(피해자 등이 동의함)

비 고	

사법경찰관 *성명*